
입 법 정 보

2019-11호



목 차



1.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	4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5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인사혁신처).....	6
4.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	6
5.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7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7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8
8.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8
9.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0
1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
1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
12.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
1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4
14.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4
15.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4
1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15
17.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6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7
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8
20.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8
21.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9
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
2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1
2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1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1
2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2
2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22
2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2
29.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3
30.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4
31.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26
32.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26
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7
34.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8
3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29

36.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정(안) (문화관광체육부).....	29
3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0
3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30
3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0
4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법(안).....	31
4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2
4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3
4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4
4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안전부)	35
4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36
4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6
4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37
4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38
4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8
5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9
51.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39

정부입법 예고

1.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9. 5. 20.
- 마감일자 : 2019. 7. 1.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청 과정에서 사건관계자들의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이들의 개인정보 등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심사기일을 연기요청 시, 운용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안 제2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제4조의2 일부 개정)

- 1)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 관련, 소청심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동법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의 처리 근거 조항 마련
- 2) 피소청인은 소청심사 자료 작성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 ·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 3) 누구든지 소청심사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방어권 행사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나. 심사기일 지정 관련(안 제8조제1항 일부 개정, 제8조의2 및 제14조의2 신설)

- 1) 동 규정 제8조의 약간의 시일 변경을 요청하는 ‘심사 연기’는 ‘기일 조정’으로 용어 개정하여 상당한 시일 후에 심사 받기를 희망하는 ‘심사 연기’와 구분하여 운용
- 2) 상당한 시일 후에 심사 받기를 희망하는 ‘심사 연기’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소청인의 권익 구제 도모
- 3) 소청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다. 심사조서 범위 확대(안 제12조 일부 개정)

- 1) 심사조서의 범위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시켜 업무의 효율성 제고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5. 21.
- 마감일자 : 2019. 6. 4.

○ 주요내용

가. 비상임심판관 위촉에 대한 승인, 심판변론인의 등록 취소 규정 삭제(현행 제9조제2항 및 제21조 제1항 삭제)

- 1) 지방심판원장이 비상임심판관 위촉시 중앙심판원장의 승인, 심판변론인 등록 취소는 신분변동 관련사항으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해당조항 삭제함

나. ‘속기·녹음·영상녹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 관련규정 정비(현행 제25조 및 제26조 삭제, 제73조 개정)

- 1) 해양사고관련자, 이해관계인 또는 심판변론인이 관계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판정에서 속기, 녹음·영상녹화 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해당 조항 삭제.
- 2) 해양사고관련자 등은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심판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판원이 정하는 장소에서 관련 기록을 복사하는 등 열람·신청 절차, 복사의 방법,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 등 규정

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2 개정)

-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행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일부 과태료 금액 상향(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9. 5. 21. • 마감일자 : 2019. 6. 12.
-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등(제6조)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기관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
 - 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등(제10조 ~ 제12조)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 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제13조, 제14조)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야 함
 - 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제15조, 제16조)
 - 1)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면책하고, 징계 등을 면제함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4.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9. 5. 21. • 마감일자 : 2019. 7. 1.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로 하면서 고도별 조례로 허가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조례 제정 여부나 조례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소

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법령정비 지적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1조제8항 단서 중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후” 삭제

5.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5. 22.

● 마감일자 : 2019. 6. 4.

-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법률 제16124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에 따라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병해충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컨테이너 취급 업무 종사자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조2 신설)

나.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병해충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안 제3조의5 신설)

다.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 요청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안 제6조 개정)

마. 역학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6조2 개정)

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5. 23.

● 마감일자 : 2019. 7. 2.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303호, 2019. 3. 26. 공포, 2019. 9. 27.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연구 관리센터의 지정 요건 및 취소 정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안 14조의2, 14조의3), 취약계층의 범위를 ‘옥외근로자’에서 ‘옥외작업자’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아니면서 농업작업 등 옥외(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이 필요한 사람들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기 위함임(안 14조)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5. 23. • 마감일자 : 2019. 7. 2.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303호, 2019. 3. 26. 공포, 2019. 9. 27.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연구 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률에서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등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안 제6조)
 - 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안 제17조제1항제3호)
 - 다. 법률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적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 2)

8.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5. 23. • 마감일자 : 2019. 7. 2.
- 최근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경제 활동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런 환경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예방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는 환경교육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지역환경교육계획이 상호 연동되도록 하고, 이행평가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며, 환경교육의 거점기능을 하는 국가(지역)환경교육센터의 체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센터간 유기적인 연계 및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내용·교육시설 등의 현황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환경교육의 추진체계와 기반을 정비하는 것임.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고,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수학교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교원의 교습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및 환경보전활동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 1)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외에 국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가치관 등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구체화

나. 국가환경교육계획 등의 수립 (안 제5조)

- 1) 환경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환경교육 계획은 국가환경교육계획 수립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며, 계획내용을 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환류하는 등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 체계를 마련

다.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7조)

- 1) 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하고, 심의안건을 확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

라. 학교환경교육대상 (안 제9조)

- 1)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어린이집을 학교환경교육대상에 추가

마.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안 제9조의3)

- 1) 환경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우수학교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안 제11조)

- 1) 사회환경교육지도사라는 명칭이 길고 진부하여 환경교육사로 변경하고, 현재 양성기관의 장 명의로 교부하는 자격증을 환경부장관 명의로 교부하여 자격증의 위상과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임

사. 사회환경교육기관의 관리·지원 (안 제12조의2)

- 1) 시·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교육대상·시설·내용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회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안 제16조, 제16조의2)

- 1)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체계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자. 환경교육도시 지정 (안 제16조의3)

- 1)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차. 환경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안 제17조의3)

- 1) 환경교육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매년 환경교육실태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환경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9.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 예고일자 : 2019. 5. 23.

● 마감일자 : 2019. 7. 2.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은행, 관공서 등에서 신분확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편의 제공

○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항에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39조의2)

- 1) 면허증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가능한 처리근거를 마련하여 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1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5. 23.

● 마감일자 : 2019. 7. 2.

-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 등이 없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신속하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도입하고,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해서 수입중단 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증명서 인정범위 확대(안 제27조제1항)

- 1) 수입 축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식품등에 대해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로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 문서 형태를 인정하고자 함

나. 현지실사를 방해 기피하는 해외작업장 수입중단 조치(안 별표6)

- 1)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도 해외작업장의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도입(안 별표 9)

- 1)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 등이 없는 수입식품등 중 차년도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입식품등 검체 운반 방법 개선(안 별표 9)

- 1)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수입식품등 검체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함

1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5. 23.
- 마감일자 : 2019. 6. 13.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전기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소규모 전기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206호, 2019. 1. 8. 공포, 2019. 7. 9. 시행)됨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대기업이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액을 규정하고, 하한을 적용하는 대상 공사에 대하여 구체화함. 또한, 하한을 적용하는 공사 중 수의계약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의2 신설)

12.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5. 23.
- 마감일자 : 2019. 6. 7.
- 「식품산업진흥법」 개정(법률 제16125호, ‘18. 12. 31. 공포, ’ 19. 1. 15.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한편, 우수식품등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기 입법예고(‘19.4.12 ~ ’ 19.5.21)된 내용 중 신설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의 명칭 사용 금지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누락 및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9조의2) 일부 조문 추가로 다시 입법예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식품산업진흥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시행령 제1조의2)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30일까지 수립토록 함
 - 나.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분야에 식품산업 경영 및 창업 추가(안 시행령 제10조)

- 1)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력양성기관이 식품사업 경영 및 창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다.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에 필요한 계약재배 등의 교류협력사업 지원 대상에 산림조합을 포함(안 시행령 제13조의2)
- 1) 우수한 임산물의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지원 대상에 생산자 단체인 산림조합을 포함
- 라.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명칭 개정, 지원한 자금의 반환 및 지원금의 지급 중단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시행령 제22조의2제3항, 제4항, 제5항)
- 1) 명칭변경에 따른 해당 조문 변경,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그 전수자에게 지원한 자금의 반환 절차, 지원금의 중단 사유 통지, 명칭 도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 마련
- 마. 식품 산업표준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 근거 마련 및 관련 업무의 기관 위탁 근거 마련 (안 시행령 제26조제3항, 제39조제6항)
- 1) 식품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조사·연구 추진 및 해당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 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원산지인증 대상 명확화(안 시행령 제31조제1항)
- 1) 인증대상 가공식품이 수산가공품 중 식품인 경우와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중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보다 큰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보다 큰 경우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명확화
- 사.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의 농촌진흥청 위임 근거 마련(안 시행령 제39조제1항)
- 1)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보급, 재배 기술 교육 등의 사업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 위임
- 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39조의2)
- 1)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회수와 같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1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5. 23. • 마감일자 : 2019. 7. 2.
-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취급 및 처리 허용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주거복지 정책을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허용
 - 1)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르면 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 처리는 제한되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바 이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필요

14.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5. 23. • 마감일자 : 2019. 7. 2.
-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취급 및 처리 허용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주거복지 정책을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허용
 - 1)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르면 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 처리는 제한되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바 이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필요

15.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5. 24. • 마감일자 : 2019. 7. 3.
- 환경 신기술의 원활한 도입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

등록 시 의무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장비를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에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먹는물수질 검사기관 및 수도용 자재 및 제품 검사기관의 의무구비 장비를 유연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먹는샘물 제조업 열거된 장비를 관련 분야 시험기준(먹는물수질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에 적용되는 장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의무 구비장비로 인정(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 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의무구비 장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다른 장비로 갖추어도 의무구비 장비로 인정하도록 규정(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 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 검사기관 의무구비 장비* 외에도 관련 분야 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장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의무구비 장비로 인정하도록 규정(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개정)

1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5. 24.
- 마감일자 : 2019. 7. 4.

○ 목재의 규격·품질 검사 합리화로 국민안전 및 소비자 보호, 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고, 과태료 규정 정비, 부적합한 목재제품 유통·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 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학위수여 요건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상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재제품 원료인 “목재”를 안전성 평가 대상에 포함(안 제17조)
- 나. 목재등급평가 자격시험 및 자격증제도 도입(안 제19조의6 신설)
 - 1) 종전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에게 등록” 하도록 하던 것을 “교육이수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자

- 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발급” 받도록 함
- 다.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 규정(안 제19조의7~안 제19조의10 신설)
- 1)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사유, 자격증 발급 절차, 자격취소 규정,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 함
- 라. 목재등급평가업 등록제도 도입 및 등록 절차등 신설(안 제19조의11~제19조의15 신설)
- 1)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목재등급평가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목재등급평가업을 등록하도록 함
 - 2) 목재등급평가업 등록절차, 결격사유, 직무 및 취소사유등을 규정함
 - 3) 목재등급평가업 등록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한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함
- 마. 목재제품 허위표시 금지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 1) 목재제품이 아닌 제품을 목재제품으로 표시하거나 목재제품명으로 판매·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 신설
- 바.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결격사유 규정(안 제20조의3)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등에 대하여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
- 사. 목재제품 규격·품질 기준 위반자등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안 제45조)
- 1) 목재·품질 기준 위반자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확하게 정비
 - 2)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증 관리 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아. 목재제품 규격·품질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47조)
- 1) 처벌 규정중 위반행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2) 자격증 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17.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5. 24.
 - 마감일자 : 2019. 7. 3.
-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제90조 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세 감면대상으로 운영

중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서 펌프, 관 압연기등 60개 품목을 제외하고, 경도측정기, 혼련기, 웨이퍼 분석장비 및 밸런싱 머신 등 3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95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5. 24.
 - 마감일자 : 2019. 7. 3.
- 중도인출(중간정산) 남용으로 인한 노후소득재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유별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등 중도인출(중간정산)제도를 개선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방법을 개선하는 등 재정검증제도를 내실화하여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퇴직급여 중도인출(중간정산) 남용으로 인한 노후소득재원 고갈 방지를 위하여,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 중 남용될 우려가 있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의 범위를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가입자가 일정금액(임금총액의 12.5%)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로 제한하였음(안 제3조, 제14조)
 -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재정검증 강화(안 제6조, 제22조, 제31조, 제33조)
 - 1)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중 “사내게시”에 의한 방법을 삭제하여 재정검증 결과가 근로자에게 보다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였음
 - 2) 퇴직연금제도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중 간사기관이 재정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비간사기관에 요청할 경우 비간사기관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자료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고, 또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급여지급능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그 시기를 구체화하고, 사용자가 간사기관을 선정

또는 변경시 7일 이내에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재정검증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음

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시 퇴직연금사업자의 본인의 상품뿐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제공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금리 차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노동자 수급권 보호하고자 함(안 제34조)

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입 예정자 포함)가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27조, 제30조)

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5. 24.

● 마감일자 : 2019. 7. 3.

○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제도 운영현황 통지 기한 연장(안 제7조제4항)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 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운영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야 하는 기한을 “7일 이내” 에서 “10일 이내” 로 변경

나.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서식 간소화(안 별지 1,2호서식)

1) 퇴직연금규약 신고서의 기재 항목 중 퇴직연금규약 심사에 평균 재직기간, 임금체계, 도입 사유 등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고,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은 추가

2)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처리기간을 “14일” 에서 “7일” 로 단축

20.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5. 27.

● 마감일자 : 2019. 7. 8.

○ 당사자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조정절차의 개선과 원인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

공포('18.10.16.)됨에 따라 원인재정 제도의 처리기간, 원인재정 신청서 기재사항, 수소법원에 의한 원인재정 촉탁에 따른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인재정제도 신설에 따른 처리기간 및 신청서 기재사항 설정(안 제8조제2호 및 제12조제1항 개정)

- 1) 원인재정의 도입 취지인 환경분쟁사건의 신속한 해결위해 처리기간을 6개월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청인의 요청 등을 통해 연장이 가능토록 하며, 원인 재정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나. 수소법원의 원인재정 촉탁에 따른 자료제출 및 재정서 송부 (안 제48조의2 및 제48조의2 및 제 48조의3 신설)

- 1) ” 수소법원의 촉탁에 따른 원인재정이 신청될 경우 사건에 관한 설명 및 관련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 원인재정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에게 재정서 원본을 송부 “하는 수소법원에 의한 원인재정에 관한 절차마련

다. 원인재정 수수료의 설정(별표1 개정)

- 1) 책임재정의 경우 신청인이 신청한 조정가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원인재정은 환경피해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므로 신청인의 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토록 함

21.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5. 27.
- 마감일자 : 2019. 7. 8.

- 당사자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조정절차의 개선과 원인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 · 공포('18.10.16.)됨에 따라 원인재정신청서, 원인재정 변경신청서, 조정결정 등 원인재정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인재정, 조정결정 등 문서의 서식 신설 및 개정(안 제3조 개정)

- 1) 원인재정 및 조정결정 등의 문서서식 중 출석요구서(제5호의2),

불출석사유서(제5호의3호), 조정결정(제7호의2), 원인재정(제13호의3), 원인재정신청서(제15의3호)를 신설하고, 책임재정(제13호), 책임재정신청서(제15호), 알선·조정·책임재정·원인재정·중재 변경신청서(제17호)의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5. 27.
 - 마감일자 : 2019. 6. 13.
 -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공유 활용 근거 마련을 통한 공유경제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시설 유치 시 대부특례 대상 시설의 지자체 조례 위임으로 지방분권 강화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간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확대를 통한 공유 활용(안 제9조제1항제11호)
 - 1) 자치단체간 공용건축물로 한정하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범위의 확대
 - 2) 교육·일반자치, 광역·기초 간 공유 활용 확대 제고
 - 나. 물품 무상대부를 통한 공유경제 구현 (안 제75조제4호)
 - 1) 지자체 물품을 취약계층 등에 업무시간 외 무상대부 허용(대부 대상 범위 등은 조례로 위임)
 - 2) 유휴 물품의 무상대부 확대로 공유서비스 활성화 기대
 - 다. 일자리창출 시설 유치를 위한 대부 특례의 조례위임(안 제29제1항제19호)
 -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장기대부 시설* 중 행안부장관 지정시설을 조례로 위임
- * 공장·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관광·문화시설,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 2) 현행 관광·문화시설 적용 대부대상자의 선정기준·절차·방법을 각목 시설에 모두 적용
- 라. 공유재산 관리위탁과 사무위탁이 결합된 경우의 위탁기간 명확화(안 제19조제2항)

- 1) 관리위탁과 사무의 민간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관리위탁 기간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

2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5. 27. • 마감일자 : 2019. 7. 8.
- 계량기사업자 등이 폐업신고 시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 등의
서류를 제출(반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
급 받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폐업신고 제출서
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폐업신고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 명시(안 별지 제9호 서식)
 - 1) 폐업신고를 하려는 계량기사업자가 등록증 등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
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등록증 등 서류 ‘분실사유’ 작성
란을 마련

2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5. 27. • 마감일자 : 2019. 7. 8.
- 현행 5대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을 추가·시행하기 위하여 폐암검진
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폐암 검진기관의 지정 관련 별지 서식(안 별지서식 1, 2, 3, 6호)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9. 5. 27. • 마감일자 : 2019. 7. 8.
-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의 창작 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게임개발

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작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2호 개정)

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의 재질을 유리에 한정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2제5호 나목 개정)

2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5. 27.
- 마감일자 : 2019. 7. 8.

○ 성능이 입증되지 않아 구매위험이 높은 기술개발 시제품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용화 직전 또는 준비단계 시제품을 정부, 공공기관 등이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9. 5. 27.
- 마감일자 : 2019. 7. 8.

○ 국방개혁 2.0 추진계획에 따라 비리방지대책이 취약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정부부처 수준으로 자정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기술발전 추세 및 연구개발 정책 변화 등에 따라 필요시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임.

2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5. 28.
- 마감일자 : 2019. 7. 26.

○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야외 운동기구’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29.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5. 29.

● 마감일자 : 2019. 7. 10.

○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가 도입되는 등 효율적·효과적인물환경관리보전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10.16. 개정, 2019.10.17. 시행)됨에 따라,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호소 수생태계 현황 조사 주기를 설정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대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존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호소 수생태계 현황 조사 주기 설정(안 제30조제4항)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측정·조사하여야 하는 대상 호소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을 3년마다 조사·측정 및 분석하도록 함.
-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대행계약 등(안 제60조)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로 명확히 하고, 운영사업 대행 시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하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 세부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절차(안 제65조)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가산금에 관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기일 이내 이의를 신청하도록 함.
- 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입력내용(안 제79조의3)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 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위·수탁자에 관한 내용, 폐수의 종류·양 및 운반 차량번호 등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하도록 함.

마.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81조, 제84조)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며, 수자원개발시설과 관련한 측정망 설치 및 조사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함.

30.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5. 29.
- 마감일자 : 2019. 7. 10.

○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가 도입되는 등 효율적·효과적인물환경관리보전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10.16. 개정, 2019.10.17. 시행)됨에 따라,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입력방법,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신청,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차수 적용을 명확화하는 등 기존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안 제22조)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측정망의 종류를 규정함.
- 나.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수리여부 통지기간(안 제38조의2)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신고의 경우 10일, 변경신고의 경우 5일로 함.

-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 준수의 예외(안 제70조의2)강우,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등을 위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 후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는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예외적 사항을 규정하고,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 협의절차, 조건 등을 마련함.
- 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신청, 성능검사 항목·기준·방법 및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판정의 취소(안 제78조의3부터 제78조의9)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성능검사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성능검사의 항목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성능시험 결과 및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으로 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시험을 위한 시설·장비, 기술인력 및 시험능력을 갖춘 기관을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함.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성능검사가 완료된 경우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판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도록 규정함.
- 마.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등(안 제78조의10, 제78조의11)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정도 평가방법과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 조사·연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안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검사기관을 삭제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사.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의 입력방법(안 제92조의2)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수의 전자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하려는 자가 이용하여야 할 전산장치, 장애발생 시 입

력 방법 등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입력방법을 규정함.

31.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 예고일자 : 2019. 5. 29. • 마감일자 : 2019. 6. 7.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장이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장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정함
 - 1)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자 : 1차 위반시 60만원, 2차 위반시 12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32.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9. 5. 29. • 마감일자 : 2019. 7. 8.
-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요건 완화 및 전환 후 필수보직기간 단축을 통해 민간 인재의 공직 유입 확대를 촉진하고, 민간인만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추천임용 후보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임용토록 하여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며, 공모 직위를 인사교류로 운영시 거쳐야 했던 충원시기 조정 협의를 면제하여 타부처 공무원 임용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요건 완화(제9조)

- 1)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신분불안 해소 및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유입 확대를 위해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요건인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 조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나.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후 3년 필수보직기간 완화(제9조)
 - 1)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로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직위에서 추가 재직 의무기간(3년) 규정을 완화(1년)하여 보직 경로 제한을 해소하도록 개정함.
- 다. 경력개방형 직위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제7조)
 - 1) 개방형 직위 선발시 각 부처에서 경력 전문성 역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격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민간인만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경우에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각 부처에서 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임용토록 개선.
- 라. 공모 직위 충원시기 조정협의 면제범위 확대(제14조)
 - 1) 공모 직위를 인사교류로 운영하거나 공개 모집 없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거쳐야 했던 충원시기 조정 협의를 면제하도록 개선.
- 마. 공모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하는 경우 전보시 원소속기관 복귀보장(제19조)
 - 1) 공모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하는 경우도 공개모집에 따른 공모 직위 임용자와 동일하게 결원여부 상관없이 원소속기관 복귀가 보장되도록 개선.

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5. 29.
 - 마감일자 : 2019. 6. 19.
-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별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계 중

양행정기관이 소관별 지원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지원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 예정임(법 제17조의2제2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4항 신설). 또한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지역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 예정임(법 제17조의4 신설).

이에 해당 법조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 신설).

○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안 제15조의5)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을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동조 제1항)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 제출을 요청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함(동조 제2항)

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안 제15조의6)

- 1)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의 대상 및 인상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34.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9. 5. 29.
- 마감일자 : 2019. 7. 8.

- 가족호텔업을 등급평가 의무화 대상 업종에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호텔업자의 서비스 질 제고 노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호텔경영사 및 관리자 자격시험에 인정되는 외국어시

험 종류를 확대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어학시험 합격 기준 점수를 마련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안 제22조 제1항)

3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 예고일자 : 2019. 5. 29.

• 마감일자 : 2019. 7. 8.

- 가족호텔업을 등급평가 의무화 대상 업종에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호텔업자의 서비스 질 제고 노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호텔경영사 및 관리자 자격시험에 인정되는 외국어시험 종류를 확대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어학시험 합격 기준 점수를 마련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안 제25조 제1항)

나.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 자격취득에 인정되는 외국어시험에 중국어 및 일본어를 추가(안 제47조 제1항 제2호)

다. 청각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어학시험 합격 점수기준 별도 마련(안 제27조 제3항 및 별표 15)

라. 변경된 어학시험제도를 반영하여 합격 점수 현행화(별표 15)

마. 자격시험 일정을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변경(안 제49조 제2항)

바. 호텔 자격증 명칭 변화에 따른 규정 현행화(별표 16)

36.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정(안) (문화관광체육부)

• 예고일자 : 2019. 5. 29.

• 마감일자 : 2019. 6. 10.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운영에 기여한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증표로서 기장을 수여하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3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5. 30. • 마감일자 : 2019. 7. 9.
- 건강보험 자격 변동시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을 ‘자격 변동일’
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한시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어 한시적 감액이
종료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경우 자격변동에 따른 한시적 감액 적용기간의 예외를 두도록 함

3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5. 30. • 마감일자 : 2019. 7. 9.
-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허가·재허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공공
성·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
부를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허가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재허가시에
도 해당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3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5. 30. • 마감일자 : 2019. 7. 10.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8.3.27., 시행 ’ 20.1.1.)
으로 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되고 감염병 신고의무자가 확대됨에 따

라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감염병 발생 초기 현황 파악 및 초기 대응 등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1급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감염병 발생시 신고해야 하는 장소에 대한 근거 법조항 수정하고, 약사법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던 소독약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으로 동 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사항 반영(안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33조, 별표 2, 별지 제1호의 3~5 서식)
- 나. 감염병 신고의무자 확대 및 제1급 감염병 발생 신고방법 변경(안 제6조, 제7조)
- 다. 감염병 발생시 신고해야 하는 장소에 대한 법률 인용조항 수정(안 제8조)
- 라. 살균·살충·구서 등의 소독약품 관리 관련 근거법 변경사항 반영(별표 6)

4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법(안)

- 예고일자 : 2019. 5. 30.
- 마감일자 : 2019. 7. 15.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자체 군 경찰 소방기관 등에 대한 총괄 조정 지원 경험의 부족하여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하는 방사능 재난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방사능 방재에 관한 긴급 대응 조치를 위해 설치되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산하에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조치 이행을 총괄 지원하기 위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두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때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방사능 방재훈련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범정부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 방사능재난 등의 대응 관리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법 제19조제3항 개정)
- 나. 방사능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가 주민보호조치를 총괄 지원하도록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산하에(법 제26조제2호 개정)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설치(법 제32조제3항 신설)
- 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한 평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실시(법 제37조제4항 개정, 법 제37조제5항 신설)

4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5. 31.
- 마감일자 : 2019. 7. 10.

- 기존 위해우려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관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조건을 학술적 목적으로 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관리를 통해 외래생물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33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권한의 위임 사항과 업무의 위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유입주의 생물 위해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 1) 책임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신청인이 해당종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
- 나. 유입주의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관리 등 법 개정내용에 따라 권한의 위임 사항 수정(안 제16조 개정)
 - 1)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의 반입·방출 등 취급관련 허가와 해당 생물종에 대한 방제 등 후

속관리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다. 유입주의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관리 등 법 개정내용에 따라 업무의 위탁 사항 수정(안 제16조의2 개정)

1)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를 국립생태원장에게 위탁

4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5. 31.

• 마감일자 : 2019. 7. 10.

○ 기존 위해우려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관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조건을 학술적 목적으로 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관리를 통해 외래생물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33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권한의 위임 사항과 업무의 위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입주의 생물 위해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근거 마련
(안 제12조의2 신설)

1) 책임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신청인이 해당종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

나. 유입주의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관리 등 법 개정내용에 따라 권한의 위임 사항 수정(안 제16조 개정)

1)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의 반입·방출 등 취급관련 허가와 해당 생물종에 대한 방제 등 후속관리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다. 유입주의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관리 등 법 개정내용에 따라 업무의 위탁 사항 수정(안 제16조의2 개정)

1)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를 국립생태원장에게 위탁

4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5. 31.

• 마감일자 : 2019. 7. 10.

○ 기존 위해우려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관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조건을 학술적 목적으로 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관리를 통해 외래생물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33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기준 및 허가·신고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입주의 생물 등의 위해성평가 기준 및 절차 규정

- 1) 위해성평가계획에 따른 ‘정기(매년) 위해성평가’와 유입주의 생물 최초 반입 시 실시하는 ‘수시위해성평가’의 기준(생태적 특성, 확산 양상 등)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 2) 유입주의 생물 등의 위해성 평가 결과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반입 전 생태계교란 생물 등*으로 지정토록 규정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세부절차 규정(안 제9조 개정)

- 1) 유입주의 생물 최초 수입·반입 신청 시 위해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신청인 제출서류 및 신청 접수후 처리기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절차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 1)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위해성평가 결과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정 해제 여부를 협의하여 지정 해제 결정 시 관보에 고시토록 규정

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허가 등에 필요한 제출서류 규정(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 1)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반입하려는 경우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반입하려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함.

마.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에 필요한 제출서류 규정

- 1) 학술연구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외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을 금지하는 바, 허가를 위한 서류로 학술연구 목적 및 사후 회수 방안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안 제11조의5 신설)

바.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를 위한 제출서류 규정

- 1)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사육·재배를 지속하려는 경우 사육·재배 목적 및 연장사유 등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6 신설)

4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5. 31.
- 마감일자 : 2019. 6. 21.

-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제4조)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사전컨설팅 운영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엄정히 처리해야 함

나.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등(제6조)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 과제 발굴, 소극행정 근절 및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 표창·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다. 적극행정 관련 사항 심의 의결(제9조)

- 1)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자체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함

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제10조, 제11조)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야 함

마.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및 지원(제12조, 제13조, 제14조)

- 1)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요구등을 면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제한,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4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5. 31.
- 마감일자 : 2019. 7. 10.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 으로 되어 있어 중복 또는 무분별한 지정이 우려되고 지역별 균형있는 지정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주체 개정 (안 제16조의3)

- 1)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 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개정

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주체 개정 (안 제16조의4)

- 1)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 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개정

4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5. 31.
- 마감일자 : 2019. 7. 31.

- ESS 발화·화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

로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전자변환기기(PCS)를 KC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확대 필요

○ 주요내용

- 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 사용 대상에서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 시스템에 한해 정격전압 직류 1천5백볼트 이하의 제품으로 확대
- 나. ESS용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를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신설
- 다. ESS용 전력전자변환기기 안전관리 용량범위를 100kW 이하 → 2MW 이하로 확대(품목명 및 단위 수정 포함)

4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5. 31.
- 마감일자 : 2019. 7. 10.

- 유턴종합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 '18.11)의 후속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생산하는 제품의 동일성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생산하는 제품의 동일성 기준” 완화(안 영 제3조제2항)

- 1) 현행 “생산하는 제품 동일성 기준”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사업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생산품목 확대 및 다변화 노력을 제약함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유턴기업 생산제품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유턴종합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 '18.11.)
- 2) 제품생산의 동일성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로 완화
- 3) 제품생산의 동일성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와 생산품목 확대·다변화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5. 31.
 - 마감일자 : 2019. 7. 10.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은 형벌의 일종인 징역형에 부과되는 정역 의무로서 헌법 제32조제3항에서 말하는 ‘근로’와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근로조건 법정주의”가 ‘작업’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시간이 과도할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건강권이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작업’은 ‘근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형자의 1일 최대작업시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수형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1일 허용되는 최대 작업시간을 8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취사·청소·간호 등 작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1일 최대 4시간을 한도로 작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5. 31.
 - 마감일자 : 2019. 7. 10.
-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을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어 ‘특수학교’를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자율학교 지정·운영 대상을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특수학교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05조제1항)

5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5. 31.
- 마감일자 : 2019. 6. 10.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주요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현장점검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충실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통신재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요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지역 등에 출입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제30조제2항제3호)

51.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9. 5. 31.
- 마감일자 : 2019. 7. 10.
- 경찰공무원의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전보하거나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의 제한 기간 중이더라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전보의 제한의 예외사유를 신설하고, 경찰공무원법 이 경찰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 근거에는 포함되지 않은 입법 미비를 해소하며, 전문인력 선발이라는 경력경쟁채용의 취지에 맞도록 경찰특공대·세무회계 분야의 필기시험과목수를 줄이고, 교통공학 분야는 경찰 교통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